

제261회 강서구의의회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18. 11. 28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8년 11월 28일
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18 - 61
- 나. 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6일
- 라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8일

2. 제정이유

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「지방세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,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
(안 제1조~제3조)
- 나. 납세자보호관의 설치, 선발기준, 업무 및 권한을 정함
(안 제4조~제7조)
- 다. 납세자 보호업무의 심의 (안 제8조, 제9조)

- 라. 고충민원의 신청, 분류, 처리기간 등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 ~ 제19조)
- 마.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 ~ 제23조)
- 바.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(안 제24조 ~ 제28조)
- 사. 납세자 권리현장에 대한 사항 (안 제29조 ~ 제30조)
- 아. 기타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관리 등 (안 제31조 ~ 제3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8. 9. 19. ~ 10. 10.) 결과: 의견없음

(2) 비용추계서(미첨부 사유서) : 별첨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(4) 사전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본 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

나. 주요 내용

1) [안제1조~3조]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등 규정

2) [안제4조~7조] 납세자보호관 관련 규정

-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의 구민의 권리구제 담당부서에 설치하도록 규정 (감사담당관에 배치 예정)
-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으로
 - 소속직원 중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직원 또는
 - 법률·회계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음
-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는
 -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
 - 세무조사·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
 -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
 -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규정
-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
 - 위법·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
 - 위법·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
 - 위법·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절차의 일시정지
 -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
 - 과세자료 열람·제출 요구 및 질문·조사의 권한을 가짐

3) [안제8조, 제9조]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관련 규정

-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관련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 처분금액 100만원 초과 건에 대해 납세자보호를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

4) [안제10조~제19조] 고충민원 관련규정으로

- 고충민원의 대상과 분류, 처리준칙, 신청기간과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였음

5) [안제20조~제23조]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관련

- 세무부서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하여 신청절차 및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규정

6) [안제24조~제28조]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

- 권리보호 요청 대상과 고충민원과의 구분, 처리원칙, 신청기간과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였음

7) [안제29조, 제30조]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규정

-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준수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

8) [안제31조~제33조]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

-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관리하도록 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(2017.12.26.공포, 2018.1.1.시행)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, 권한, 자격 등을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-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고,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

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

-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부서에 배치하여 보다 독립적인 지위와 세무부서의 처분 및 세무조사 등에 대해 시정, 일시 중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,
-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직원을 임명하도록 한 바, 세무부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편에서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근무환경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.

□ 지방세기본법

제77조(납세자 권리보호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6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,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6.>

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·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51조의2(납세자보호관의 업무·권한·자격 등)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,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
2. 세무조사·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
3.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
4.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법·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
2. 위법·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
3. 위법·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

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

4.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·법률·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,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